

가구별 종교가 절세효과 및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전병욱**

<요 약>

본 연구는 세법상 절세효과를 통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과 함께 일반적인 비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기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인 2013년말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비교적 절세효과와 무관하게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작은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개인의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종교단체 기부금에 비해서는 약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감소한 절세효과에 대응해서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고세율 가구 중 특히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종교단체 기부금의 감소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당초 감소시키려던 것보다 더욱 감소시킨 반면 여기서 줄인 금액을 추가적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인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대상 기간에 걸쳐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및 공익적 기부금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개인의 종교적·공익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적 고려가 모든 종류의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종속변수인 경우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사후적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인식한 절세효과에 비례해서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킨 결과 부수적인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연도 중에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

*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bwjun@uos.ac.kr

논문접수일 2017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21일

면 정확한 공제한도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가구들이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출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가구에서는 기부금 지출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별 지출액을 통한 사후적인 절세효과와 정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더욱 현저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전적인 절세효과가 한도초과 기부금 지출액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종교, 종교단체 기부금, 공익적 기부금, 한도초과 기부금, 절세효과, 세액공제

I. 서 론

종교는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종교는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자본, 문화형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Wiseman and Young, 2013) 종교의 가르침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Emmami and Nazari, 2012).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는 종교가 개인의 일상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지만¹⁾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1) 이와 관련한 최근의 국내 선행연구 중에서 김솔이와 김지범(2016)은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유형 및 참석빈도가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교유형과 관계없이 종교활동에 자주 참석할 때 자살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종교활동에 자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살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연희와 김지범(2016)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종교유형 및 참석빈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교유형과 관계없이 종교활동에 자주 참석하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를 더 수행하는 반면 종교활동에 드물게 참석하는 노인은 종교가 없는 노인과 건강증진행위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종교활동에 자주 참석하는 노인 중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노인이 불교 및 개신교를 믿는 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를 더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엄지혜(2016)는 2012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종교유형 및 참석빈도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불교만이 유의미하게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종교모임의 참석빈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개선효과가 커지는 것은 개신교에서만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엄지혜(2016)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교리상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는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만 불교를 믿는 노인들의 종교모임 참석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종교모임을 통한 이러한 개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송명규(2016)는 2005년-2009년에 수행해서 2014년에 공개한 제5차 World Value Survey의 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의 차이가 친환경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신교는 종교 그 자체보다는 종교신실성이 친환경행동의사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 반면 불교는 종교 자체가 유의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세법상 절세효과를 통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과 함께 일반적인 비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기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조세혜택은 개인별 한계세율 또는 세액공제의 공제율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부 의사결정에 경제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부금 지출액이 이러한 절세효과에 비해 개인의 종교적·공익적 신념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기부 의사결정에 비경제적 성격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차연도(2007년)~9차연도(2015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절세효과의 크기가 기부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2013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된 기부자인 고소득 계층의²⁾ 절세효과가 감소했을 때 동(同)세법개정을 전후한 2개 연도(7차연도(2013년) 및 8차연도(2014년))에 걸친 해당 계층의 기부금 지출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세효과의 크기 및 변동이 기부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전체 기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과 그 밖의 공익적 기부금으로 구분해서 이상의 분석을 수행했다³⁾. 이와 함께 절세효과의 크기가 기부금 지출액에 미친 영향

우원규(2013)는 종교를 가진 24명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종교가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개신교 여성들은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같은 종교의 남성을 선호하지만 개신교 집단에서 결혼적령기인 남성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을 피하고 전도의 가능성이 있는 무종교 남성을 배우자로 고려하는 경향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원규(2013)는 개신교와 반대로 다른 종교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이상 종교는 배우자 선택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원규(2013)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개신교가 교회를 매개로 전도, 헌금, 생활행태 및 제사에 대한 태도에서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전통이나 다른 종교의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신종국과 박민숙(2013)은 20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별 종교가 소핑지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실한 종교생활을 하는 소비자의 경우 실용주의에 따라 소비하는 성향은 불교, 개신교 및 천주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동적 성향은 개신교, 가톨릭 및 불교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2015년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내용에 의하면 전체 기부금 지출액 중 급여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였다.
- 3)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종교적 기부금과 자선적 기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철희 등, 2015). 역사적으로 기부활동은 본래 종교적 목적에서 시작되어(Robbins, 2004) 종교적 기부금이 자선적 기부금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이후 이러한 종교적 목적에서 파생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려는 동기에서도 기부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기부를 자선적 기부라고 한다(강철희 등, 2012). 자선적 기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종교적 기부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강철희 등, 2015) 종교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에 영향을

은 전체 지출액을 소득세법상 공제한도 내의 지출액(이하 “한도내 기부금”)과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출액(이하 “한도초과 기부금”)으로 구분할 경우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영향을 한도초과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함께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분석한 것은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조세혜택의 영향이 가구별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즉, 앞선 절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분석내용을 다시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은 2017년에 공개된 9차연도(2015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조사대상 가구의 개별 가구원별 종교가 처음으로 포함되어서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⁴⁾.

전술한 바와 같이 종교는 매우 다양하게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개인별 종교에 따른 비경제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일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지만(이연희와 김지범(2016), 엄지혜(2016), 송명규(2016), 우원규(2013) 및 신종국과 박민숙(2013)) 종교의 차이에 따른 기부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면서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세정책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종교별 특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장래의 기부금 관련 조세정책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설계

1. 기부금 지출액 관련 과세제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는 2013년말의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는데, 2013년 이전의 소득공제 방식과 2014년 이후의 세액공제 방식의 법령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즉, 2013년 이전에는 <표 1>과 같이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전체적인 특별공제의 범위는 해당 납세자의 소득세법상 지위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에 반해 2014년 이후에는 <표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기부금과 자선적 기부금을 재정패널조사 설문지의 표현과 유사하게 “종교단체 기부금”과 “공익적 기부금”의 명칭으로 구분한다.

- 4) 물론 9차연도(2015년)의 가구원별 종교를 조사한 것이고 과거 연도를 대상으로 한 자료는 조사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별 종교는 대개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9차연도의 가구원별 종교가 1차연도-8차연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 5) 손병덕과 구철회(2013)은 Cotterill and John(2010)의 영국 자료를 이용해서 종교와 기부자정보 공개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부자정보 공개가 기부행위에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교가 미치는 유의적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분석대상 자료의 제약과 함께 종교별 차이가 아니라 종교 자체의 영향을 분석한 차이점이 있다.

2>와 같이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전체적인 특별세액공제의 범위는 역시 해당 납세자의 소득세법상 지위에 따라 구분된다.

〈표 1〉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른 특별공제의 내용(2013년 이전)

구 분	특별공제
상용근로소득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 100만원) 중 선택 항목별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⁶⁾	기부금공제 + MAX(의료비·교육비 공제, 표준공제(연 100만원))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⁷⁾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연 100만원)
그 외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연 60만원)

6)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요건과 함께 아래의 추가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 ①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④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7)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를 도입한 사업자 등
- ②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2 이상을 사용할 것

〈표 2〉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른 특별공제의 내용(2014년 이후)

구 분	특별세액공제
상용근로소득자	항목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중 선택 ⁸⁾ 항목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MAX(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외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세액공제율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2014년 이후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15%와 30%이다. 이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은 2013년까지의 소득공제에서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만, 그 대상이 되는 개별 지출액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표 3>과 같이 변동하지 않았다.

〈표 3〉 기부금공제 한도액

단계	구 분 ⁹⁾	기부금공제 한도액
1단계	법정기부금	한도기준액*×100%
2단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기준액×30%
3단계	지정 기부금 ¹⁰⁾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기준액×3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기준액×10%)+MIN((한도기준액×20%), 종교단체기부금 외 지정기부금)

* 한도기준액=기준소득금액-전단계기부금들의 공제액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8)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중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하다.

9) 주요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는 기부금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다.

2. 연구모형과 변수의 정의 및 표본구성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식(1) 및 식(2)와 같다.

$$\begin{aligned} \text{DON, RELIDON, PUBDON} = & \beta_0 + \beta_1 \times \text{POST} + \beta_2 \times \text{H_MTR} + \beta_3 \times \text{POST} \times \text{H_MTR} \\ & + \beta_4 \times \text{NINCOME} + \beta_5 \times \text{NASSET} + \beta_6 \times \text{HOUSE} \\ & + \beta_7 \times \text{FNUM} + \beta_8 \times \text{AGE} + \beta_9 \times \text{EDU} + \beta_{10} \times \text{FEMALE} \\ & + \beta_{11} \times \text{MARRIED} + \beta_{12} \times \text{METRO} + u \end{aligned} \quad (1)$$

$$\begin{aligned} \text{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 = & \beta_0 + \beta_1 \times \text{TBR} + \beta_2 \times \text{NINCOME} + \beta_3 \times \text{NASSET} + \beta_4 \times \text{HOUSE} \\ & + \beta_5 \times \text{FNUM} + \beta_6 \times \text{AGE} + \beta_7 \times \text{EDU} + \beta_8 \times \text{FEMALE} + \beta_9 \times \text{MARRIED} \\ & + \beta_{10} \times \text{METRO} + \beta_{11} \times \text{GDP} + u \end{aligned} \quad (2)$$

단, DON : 기부금 지출액(만원)
 RELIDON :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만원)
 PUBDON :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만원)
 POST : 2014년은 1이고, 2013년은 0인 더미변수
 H_MTR : 가구주의 2013년 한계세율이 15%보다 크면 1이고, 15%보다 작으면 0인 더미변수
 NINCOME : 가구 순소득(만원)
 NASSET : 가구 순자산(만원)
 HOUSE :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이고,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FNUM : 가구원 수
 AGE : 가구주의 연령
 EDU :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1이고, 그 미만이면 0인 더미변수
 FEMALE : 가구주가 여성이면 1이고,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구 분	종 류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 초과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신탁한 금액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10)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MARRIED : 가구주가 기혼이면 1이고,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ETRO : 가구의 거주지가 수도권이면 1이고, 아니면 0인 더미변수
 ATLDON : 한도초과 기부금 지출액(만원)
 ATLRDON :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만원)
 ATLPDON :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만원)¹¹⁾
 TBR :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조세혜택의 비율로 2013년 이전에는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고, 2014년 이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GDP : 연도별 1인당 국내총생산(만원)

여기서 식(1)은 선우희연 등(2017)과 같이 2013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된 기부자인 고소득 계층의 절세효과가 감소했을 때 동(同)세법개정을 전후한 2개 연도에 걸친 해당 계층의 기부금 지출액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DID(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적용했다.

식(1)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선우희연 등(2017)과 동일하게 2013년에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2013년 또는 2014년의 기부금 지출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30%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표본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표본을 한정했고, 분석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2013년과 2014년의 가구주 한계세율이 고세율에서 저세율로, 또는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변동되는 가구는 제외했으며, 2013년의 가구주 한계세율이 15%로 세액공제율과 동일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과 무차별하게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역시 분석대상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정과정과 함께 식(1)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갖춘 최종표본은 614개의 가구-연도(307가구×2년)이다.

식(1)은 패널 개별 효과(panel specific effect)를 고려해서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random-effect panel regression)을 이용해서 분석했고, 종속변수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해서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이에 비해 식(2)는 전병욱 등(2015)과 같이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기간(2007년-2015년)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의 크기가 기부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이다.

식(2)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종속변수에서 “0”의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고려해서 확률효과 토빗(random-effect Tobit)을 이용하였다¹²⁾.

11) ATLDON=(기부금 지출액-기부금 한도액), ATLRDON=(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기부금 한도액), ATLPDON=(공익적 기부금 지출액-기부금 한도액)으로 정의하였다. 즉, ATLRDON과 ATLPDON은 ATLDON을 나눈 값이 아니라 나머지 기부금 지출액이 별도로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개별 기부금 지출액 자체만으로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의 해당 초과액으로 정의한 것이다.

12) 확률효과 토빗을 이용할 때 iteration을 통해 최우추정값을 찾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속변수가 0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종교별 분포 및 기부금 지출액 자료의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9차연도(2015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이용가능한 개별 가구원별 종교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8차연도(2014년) 이전의 개인별 종교도 9차연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먼저 연도별로 가구별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부록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가구별 종교 분포에 대해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제시한 것은 “가구별 종교”를 가구주의 종교로 정의하는 경우와 이와 다른 대체적 방식으로 정의하는 경우로 구분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대체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가구 내의 가구원별 종교 분포의 형태와 개별 분포 형태에서의 가구별 종교의 정의 방법은 <표 10>과 같다. 즉, <표 10>의 대체적 방식에서는 가구주, 배우자 및 배우자 외의 가구원 순으로 개인별 종교를 관찰한 후에 “종교없음”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앞선 순위의 가구원 종교로 가구별 종교를 정의한 것이다.

두 가지 방식에 의한 가구별 종교 분포는 연도별로 대개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구주의 종교를 기준으로 가구별 종교를 구분하는 방식에 따른 결과만 설명하기로 하는데, 이것은 이후의 다른 가구별 분포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종교 분포는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개신교(16.3%), 불교(15.4%) 및 천주교(5.4%)의 순으로 높지만 종교없음(62.4%)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포는 나머지 연도에서도 유사하면서 개별 종교의 비율이 연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구별 종교 분포는 <그림 3>에서 가구원별로 집계한 종교 분포와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한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 가구의 비율과 기부금 지출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의 기술통계량은 <그림 4> 및 <그림 5>와 같고, 대체적 방식에 의한 가구별 종교를 적용할 경우의 기술통계량은 <그림 6> 및 <그림 7>과 같다.

구체적으로, <그림 4>와 같이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의 비율은 개신교(79.6%), 천주교(74.9%) 및 불교(29.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림 5>와 같이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가구당 지출액의 평균은 개신교(309만원), 천주교(105만원) 및 불교(90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가구별 집계 대신 가구원별 종교에 따라 집계하면 <그림 8>과 같이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원의 비율은 개신교(39.3%), 천주교(37.7%) 및 불교(15.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림 9>와 같이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 가구원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가구원당 지출액의 평균은 개신교(222만원), 불교(82만원) 및 천주교(82만원)의 순으로

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한 공익적 기부금 지출 가구의 비율과 기부금 지출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공익적 기부금의 기술통계량은 <그림 10> 및 <그림 11>과 같고, 대체적 방식에 의한 가구별 종교를 적용할 경우의 기술통계량은 <그림 12> 및 <그림 13>과 같다.

구체적으로, <그림 10>과 같이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공익적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의 비율은 무종교(12.9%), 천주교(9.5%), 개신교(8.9%) 및 불교(6.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림 11>과 같이 공익적 기부금 지출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가구당 지출액의 평균은 무종교(71만원), 불교(62만원), 개신교(59만원) 및 천주교(45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가구별 집계 대신 가구원별 종교에 따라 집계하면 <그림 14> 및 <그림 15>와 같이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공익적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원의 비율은 무종교(4.9%), 천주교(3.9%), 개신교(3.7%) 및 불교(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익적 기부금 지출 가구원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가구원당 지출액의 평균은 개신교(63만원), 무종교(61만원), 불교(59만원) 및 천주교(42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한 총기부금(종교단체 및 공익적 기부금의 합계) 지출 가구의 비율과 기부금 지출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총기부금의 기술통계량은 <그림 16> 및 <그림 17>과 같고, 대체적 방식에 의한 가구별 종교를 적용할 경우의 기술통계량은 <그림 18> 및 <그림 19>와 같다.

구체적으로, <그림 16>과 같이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총기부금을 지출한 가구의 비율은 개신교(81.6%), 천주교(77.9%), 불교(33.8%) 및 무종교(1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림 17>과 같이 총기부금 지출 가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가구당 지출액의 평균은 개신교(307만원), 천주교(106만원), 불교(92만원) 및 무종교(88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가구별 집계 대신 가구원별 종교에 따라 집계하면 <그림 20> 및 <그림 21>과 같이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총기부금을 지출한 가구원의 비율은 개신교(41.0%), 천주교(40.0%), 불교(18.2%) 및 무종교(6.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총기부금 지출 가구원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가구원당 지출액의 평균은 개신교(218만원), 천주교(82만원), 불교(81만원) 및 무종교(69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기술통계량

1차연도(2007년)부터 9차연도(2015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¹³⁾ 식(1)과 식(2)의 변수들

13) 식(1)의 경우에는 7차연도(2013년)와 8차연도(2014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하는 것이지만 해당 기간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술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은 생략하였다.

예¹⁴⁾ 대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4>와 같고¹⁵⁾, 가구주의 종교에 따른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라 해당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¹⁶⁾.

〈표 4〉 기술통계량
($n=39,606$)

변수	평균	표준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DON	59.09	201.93	0	0	0	25	10,000
RELIDON	50.40	190.48	0	0	0	2	10,000
PUBDON	8.68	62.21	0	0	0	0	5,000
ATLDON	42.33	177.24	0	0	0	10	10,000
ATLRDON	37.39	170.31	0	0	0	0	10,000
ATLPDON	4.56	41.35	0	0	0	0	2,700
TBR	0.0820	0.0823	0.00	0.00	0.06	0.15	0.38
TBR* ¹⁷⁾	0.0955	0.0832	0.00	0.00	0.08	0.15	0.38
NINCOME	198.66	3,234.57	-95,496	-670	196	1,104	312,014
NASSET	28,490.08	50,811.77	-194,000	5,900	15,000	32,000	2,050,500
HOUSE	0.61	0.49	0	0	1	1	1
FNUM	3.03	1.28	1	2	3	4	9
AGE	50.93	13.90	16	40	49	61	99
EDU	0.34	0.47	0	0	0	1	1
FEMALE	0.16	0.37	0	0	0	0	1
MARRIED	0.83	0.38	0	1	1	1	1
METRO	0.43	0.50	0	0	0	1	1
GDP	2,615.09	300.72	2,143	2,336	2,669	2,835	3,066

14) 식(1)과 식(2)의 설명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하되, 식(1)에는 DID 모형에 필요한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고, 식(2)에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전병욱 등(2015)이 설명변수로 채택한 GDP가 포함되었다.

15) 식(1)에서만 설명변수로 채택한 두 개의 더미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n=614$)	평균	표준편차	MIN	Q1	중위수	Q3	MAX
POST	0.50	0.50	0	0	1	1	1
H_MTR	0.45	0.50	0	0	0	1	1

16) 대체적 방식에 의한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라 해당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부록>의 <표 11>과 같다.

17)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개인별 한계세율을 계산할 때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표 5〉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라 평균값 비교(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변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없음
DON	209.52	59.85	32.77	31.47
RELIDON	197.75	49.49	25.79	23.20
PUBDON	11.77	10.35	6.98	8.27
ATLDON	160.61	46.65	19.67	20.76
ATLRDON	153.25	39.41	15.90	16.26
ATLPDON	6.14	6.80	3.45	4.29
TBR	0.0834	0.0838	0.0729	0.0836
TBR*	0.0967	0.0961	0.0850	0.0975
NINCOME	139.61	-68.63	262.82	216.91
NASSET	32,920.42	48,358.58	26,739.75	26,511.86
HOUSE	0.62	0.65	0.72	0.58
FNUM	3.16	3.12	2.79	3.04
AGE	51.54	53.03	56.64	49.45
EDU	0.44	0.53	0.21	0.33
FEMALE	0.18	0.18	0.20	0.15
MARRIED	0.86	0.87	0.82	0.82
METRO	0.55	0.78	0.17	0.43
GDP	2,642.61	2,645.33	2,639.53	2,601.71
<i>n</i>	5,727	1,877	5,416	26,422

먼저 <표 4>와 같이 분석대상 기간 동안 가구별 총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공익적 기부금,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의 평균은 각각 59만원, 50만원, 9만원, 42만원, 37만원 및 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의 중위수가 모두 0 원으로 나타나서 기부금 지출의 특정 계층 편중 현상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도초과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ATLRDON과 ATLPDON은 ATLDON을 나눈 값이 아니라 나머지 기부금 지출액이 별도로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개별 기부금 지출액 자체만으로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의 해당 초과액으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TLRDON과

물적공제는 반영하는 반면 인적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전의 절세효과(TBR)를 한계세율을 통해 측정하면서 물적공제와 함께 추정해서 계산한 인적공제의 금액까지 반영하였다. “TBR*”는 비교 목적으로 선행연구와 같이 물적공제만을 반영해서 한계세율을 측정할 경우의 절세효과이다. 이후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인적공제까지 반영한 TBR을 설명변수로 채택했지만 TBR 대신 TBR*를 설명변수로 채택한 경우에도 회귀분석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ATLPDON의 합계액이 ATLDON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법상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기부금을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와 공익적 기부금 중에서 어느 한 쪽의 기부금에 거의 대부분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이전에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2014년 이후에는 세액공제의 공제율로 측정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TBR)의 평균은 8.20%인데, 선행연구들과 같이 인적공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9.55%로 계산되었다.

가구별 순소득, 순자산 및 가구원 수의 평균은 각각 199만원, 2억8,490만원 및 3.0명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인 자가 보유 비율 및 수도권 거주 비율은 각각 61% 및 43%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 연령은 51.0세로 나타났고, 가구의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비율, 여성 비율 및 기혼 비율은 각각 34%, 16% 및 8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와 같이 개별 변수들을 가구의 종교에 따른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라 평균 값을 비교하면 세부적인 기부금 지출액 중에서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의 경우에만 천주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출액들은 개신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부금 지출을 통한 절세효과는 가구별 종교와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불교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가구별 순소득과 자가보유 비율은 불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별 순자산과 수도권 거주 비율은 천주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는 기독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 연령과 여성 비율은 불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의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비율과 기혼 비율은 천주교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회귀분석의 결과

<표 6>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인 2013년말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을 가구주의 종교에 따른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라 각각 회귀분석한 것이고, <표 7>은 <표 6>의 개별 회귀분석 결과에서 주된 설명변수인 POST*H_MTR의 t값과 유의성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¹⁸⁾.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의 한계세율이 15% 이상인 고세율 가구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절세효과의 감소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을 감소시켰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유의적 변동은 없었던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8) 대체적 방식에 의한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와 주된 설명변수의 유의성 정리는 각각 <부록>의 <표 12> 및 <표 13>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선우희연 등(2017)이 확인한 것과 동일한 분석 결과인데,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비교적 절세효과와 무관하게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작은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개인의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종교단체 기부금에 비해서는 약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감소한 절세효과에 대응해서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할 경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유의적인 기부금 지출액의 변동은 어떠한 종교 유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과 공익적 기부금을 종속변수로 해서 분석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교 유형에서 유의적인 지출액의 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확인된 공익적 기부금의 유의적인 감소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이러한 공익적 기부금의 유의적 감소와 함께 종교단체 기부금의 유의적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즉, 나머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공익적 기부금과 함께 상대적으로 강한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유의적인 지출액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공익적 기부금에서는 전체 가구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욱 유의적인 지출액의 감소가 발생했고, 종교단체 기부금에서는 전체 가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유의적인 지출액 증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세율 가구 중 특히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종교단체 기부금의 감소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당초 감소시키려던 것보다 더욱 감소시킨 반면 여기서 줄인 금액을 추가적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천주교 가구의 “종교적 관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이 다른 종교 유형과 차별화된 기부금 종류별 변동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이 개별 기부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가구 순소득은 총기부금 지출액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구원 수는 총기부금 지출액과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공익적 기부금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며, 여성 가구주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 변화(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전체 가구			기독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DON	RELIDON	PUBDON
POST	-38.33***	-36.75***	-1.47	-58.87***	-66.82***	7.66
	9.40	9.36	3.84	19.87	19.29	8.02
H_MTR	132.73***	88.10**	47.20***	460.00***	417.00***	35.06
	49.32	50.09	17.97	136.70	137.66	41.67
POST*H_MTR	-11.66	3.90	-15.52*	-74.36	-63.32	-9.43
	21.32	21.35	10.72	72.50	70.15	17.59
NINCOME	0.00*	0.00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1	0.01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13.53	11.72	-0.64	20.22	47.18	-17.05
	45.34	43.15	12.25	102.94	103.47	17.19
FNUM	16.35*	5.58	11.14*	-29.36	-35.72*	6.16
	12.42	11.43	8.39	24.92	24.49	6.77
AGE	1.23	1.11	0.15	-4.27	-4.25	-0.23
	1.42	1.42	0.41	3.62	3.70	0.56
EDU	-3.44	-40.46	33.57*	-158.32**	-180.29**	19.77*
	36.90	38.59	24.91	85.97	86.75	12.70
FEMALE	-19.84	-34.88*	13.93**	-155.92**	-173.84**	16.76
	26.03	26.37	7.55	79.19	79.83	14.22
MARRIED	-0.19	1.99	-1.97	22.52	17.23	2.98
	19.72	19.92	4.29	41.94	41.17	4.70
METRO	33.84	36.86	-2.99	52.39	53.13	0.26
	31.48	30.36	12.11	75.87	78.71	18.07
Constant	-7.42	35.20	-41.96*	565.16**	586.00**	-13.98
	96.44	98.64	29.57	250.15	252.48	30.05
Rho	0.82	0.80	0.79	0.78	0.80	0.87
R ²	0.0712	0.0325	0.0672	0.2610	0.2239	0.0479
n	614	614	614	204	204	204

* 상단과 하단의 값은 각각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 “***”, “**” 및 “*”은 각각 1%, 5% 및 10%의 유의수준

〈표 6〉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 의사결정 변화(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계속)

가구별 종교	천주교			불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DON	RELIDON	PUBDON
POST	-95.41 **	-94.09 **	-7.42	-29.91 **	-22.38 *	-7.79
	50.01	44.90	12.43	14.91	16.37	6.72
H_MTR	80.24	-23.88	97.30 ***	96.44 ***	45.92 **	49.90 ***
	88.64	85.59	38.54	28.10	27.79	21.08
POST*H_MTR	-17.09	95.44 *	-108.97 **	3.24	27.40	-25.52
	82.55	59.44	55.29	68.96	70.84	29.62
NINCOME	0.01 **	0.00	0.02 **	0.00	0.00	0.00
	0.01	0.00	0.01	0.01	0.01	0.00
NASSET	0.00 ***	0.00	0.00 ***	0.00 **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27.34	-33.35	47.11 **	15.05	20.91	-6.97
	40.82	49.12	23.67	37.31	30.48	15.94
FNUM	74.77 ***	79.61 ***	-10.13	0.81	9.50	-9.17
	19.33	20.74	12.71	15.75	13.52	8.05
AGE	5.95 **	6.33 ***	-0.04	1.11	2.37 *	-1.26 *
	2.64	2.60	1.53	1.47	1.45	0.84
EDU	123.47 **	108.21 **	7.35	25.37	46.29	-17.37
	56.02	55.63	20.42	45.45	43.18	14.53
FEMALE	133.19 **	80.85	24.99	17.16	42.38 *	-24.06
	68.64	80.06	38.61	36.78	32.78	19.79
MARRIED	-98.52 *	-183.25 ***	63.47 **			
	76.71	75.77	29.99			
METRO	-0.75	-26.09	3.16	38.80	-0.55	37.27 *
	40.21	35.98	32.73	46.00	41.64	24.55
Constant	-439.31 **	-375.65 *	-28.68	-86.43	-200.66 **	114.14 *
	232.81	245.85	114.01	124.32	114.15	72.22
Rho	0.00	0.37	0.00	0.40	0.17	0.20
R ²	0.5197	0.5048	0.5671	0.3673	0.3243	0.2961
n	42	42	42	72	72	72

〈표 6〉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 변화(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계속)

가구별 종교	종교없음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POST	-21.27***	-13.34*	-8.41***			
	8.24	8.48	2.39			
H_MTR	50.29	13.43	22.70			
	43.07	38.22	38.73			
POST*H_MTR	1.46	-0.73	2.72			
	17.48	20.26	13.08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18.30	11.01	7.48			
	16.22	14.04	13.17			
FNUM	34.40**	10.35	18.94			
	16.13	8.66	18.31			
AGE	1.36*	1.05	0.44			
	1.02	0.89	0.67			
EDU	18.71	-16.70	68.38			
	45.13	37.29	59.21			
FEMALE	-22.12	-35.20**	16.49			
	22.59	15.62	17.44			
MARRIED	-11.85	7.67	-11.26			
	12.94	12.95	10.85			
METRO	-4.55	7.29	-12.76			
	30.81	21.95	23.13			
Constant	-108.57*	-39.60	-75.33*			
	73.22	64.08	54.11			
Rho	0.82	0.57	0.83			
R ²	0.1120	0.0359	0.0626			
n	294	294	294			

〈표 7〉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 변화(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DON	RELIDON	PUBDON
전체 가구	-0.55	0.18	-1.45*
개신교	-1.03	-0.90	-0.54
천주교	-0.21	1.61*	-1.97**
불교	0.05	0.39	-0.86
종교없음	0.08	-0.04	0.21

* 표 안의 값은 주된 설명변수인 POST*H_MTR의 t값

* “***”, “**” 및 “*”은 각각 1%, 5% 및 10%의 유의수준

<표 8>은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인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대상 기간(2007년-2015년)에 걸쳐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을 가구주의 종교에 따른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라 각각 회귀분석한 것이고, <표 9>는 <표 8>의 개별 회귀분석 결과에서 주된 설명변수인 TBR의 t값과 유의성을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¹⁹⁾.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및 공익적 기부금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전병욱 등(2015)이 확인한 것과 같이 개인의 종교적·공익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적 고려가 모든 종류의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비교적 개인적 신념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의 경우에도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절세효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비해 개인적 신념의 반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공익적 기부금에 대해서도 유의적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도 역시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이들 금액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사후적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인식한 절세효과에(가구주의 한계세율 또는 세액공제율) 비례해서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킨 결과 부수적인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연도 중에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공제한도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가구들이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출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회귀분석 결과를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할 경우 먼저 종속변수가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및 공익적 기부금인 경우에는 종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세부 회귀모형에서 절세효과의 유의성이 나타나서 종교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유의적 결과가 종교없음 가구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가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기부금 지출액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85.3%)이 매우 높고, <표 5>와 같이 종교없음 가구에서 지출하는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에서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가구에서는 기부금 지출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별 지출액을 통한 사후적인 절세효과의 정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더욱 현저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전적인 절세효과가 한도초과 기부금 지출액 등에 유의적 영향

19) 대체적 방식에 의한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와 주된 설명변수의 유의성 정리는 각각 <부록>의 <표 14> 및 <표 15>와 같다.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가구 순소득, 가구 순자산 및 가구의 교육 수준은 모든 개별 기부금 지출액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고, 가구원 수, 가구의 연령, 기혼 가구주 및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대부분의 개별 기부금 지출액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와 영향(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전체 가구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166.67 ^{***}	124.50 ^{***}	140.25 ^{***}	23.10 ^{**}	15.57 [*]	9.85 ^{***}
	12.39	12.00	40.47	11.70	11.35	3.21
NINCOME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4.57 ^{**}	2.93	7.45 [*]	2.48	1.35	0.98 ^{**}
	2.52	2.42	5.21	2.34	2.27	0.57
FNUM	10.74 ^{***}	9.65 ^{***}	2.56	8.02 ^{***}	7.46 ^{***}	0.55 ^{**}
	1.19	1.13	3.46	1.09	1.05	0.26
AGE	0.66 ^{***}	0.64 ^{***}	0.85 ^{***}	0.61 ^{***}	0.59 ^{***}	0.01
	0.15	0.14	0.28	0.13	0.12	0.03
EDU	32.70 ^{***}	27.75 ^{***}	21.53 ^{***}	24.28 ^{***}	20.78 ^{***}	3.82 ^{***}
	3.97	3.70	7.42	3.50	3.35	0.69
FEMALE	2.51	1.37	0.08	1.92	0.50	1.55 ^{**}
	4.42	4.19	9.73	4.01	3.86	0.89
MARRIED	7.77 ^{***}	5.93 ^{**}	7.48	6.58 ^{**}	5.66 ^{**}	1.13 [*]
	3.30	3.19	6.43	3.10	3.01	0.82
METRO	4.75	5.64 [*]	-18.55 ^{***}	9.85 ^{***}	9.41 ^{***}	-0.47
	4.08	3.75	5.61	3.51	3.34	0.65
GDP	0.02 ^{***}	0.01 ^{***}	0.01 [*]	0.00 ^{**}	0.00 [*]	0.00
	0.00	0.00	0.01	0.00	0.00	0.00
Constant	-91.78 ^{***}	-72.37 ^{***}	-54.90 ^{**}	-51.26 ^{***}	-47.17 ^{***}	-3.27 [*]
	10.58	10.11	27.06	9.76	9.43	2.51
Rho	0.59	0.55	0.62	0.52	0.50	0.20
Log-likelihood	-255582	-254154	0.0502	-253036	-251804	-201910
n	39,606	39,606	5,108	39,606	39,606	39,606

* 상단과 하단의 값은 각각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 확률효과 토빗 대신 확률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한 경우 “Log-likelihood”는 R² 값

* “***”, “**” 및 “*”은 각각 1%, 5% 및 10%의 유의수준

〈표 8〉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기독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387.81***	349.08***	60.68***	-22.52	-33.94	5.05
	66.64	66.58	15.23	65.08	64.64	10.26
NINCOME	-0.01***	-0.01***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16.00	14.15	0.85	9.78	6.86	1.30
	13.01	12.96	2.70	12.59	12.49	1.70
FNUM	51.71***	47.45***	3.45***	42.39***	41.28***	0.95
	6.31	6.28	1.26	6.08	6.02	0.78
AGE	1.34**	1.28*	0.06	1.21*	1.19*	-0.04
	0.80	0.79	0.13	0.74	0.73	0.07
EDU	35.95**	27.02*	10.33***	25.64*	19.67	4.18**
	20.19	19.88	3.29	18.84	18.58	1.88
FEMALE	-19.63	-23.74	4.22	-16.26	-17.04	0.36
	27.18	26.81	4.73	25.53	25.21	2.82
MARRIED	40.69**	35.76**	4.77	35.17**	32.38**	1.75
	19.68	19.65	4.36	19.18	19.04	2.89
METRO	-24.27	-23.05	-1.95	-8.27	-8.13	-1.34
	20.37	19.98	3.13	18.81	18.52	1.76
GDP	0.09***	0.08***	0.01***	0.05***	0.05***	0.00
	0.02	0.02	0.00	0.02	0.02	0.00
Constant	-356.22***	-314.57***	-43.62***	-227.24***	-212.80***	-2.53
	61.37	61.04	13.04	59.15	58.65	8.73
Rho	0.51	0.50	0.21	0.47	0.46	0.09
Log-likelihood	-41048	-41040	-32604	-40904	-40864	-30523
<i>n</i>	5,727	5,727	5,727	5,727	5,727	5,727

〈표 8〉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천주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110.44***	63.36**	53.96***	-15.40	-19.17	2.80
	34.68	33.47	13.76	31.16	30.25	9.80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0.67	0.26	0.63	-2.24	-3.09	0.19
	7.16	6.87	2.58	6.21	5.98	1.84
FNUM	9.10***	7.04**	1.84*	5.78**	3.66*	2.05***
	3.30	3.16	1.18	2.85	2.75	0.84
AGE	1.12***	1.03***	0.14	0.96***	0.93***	0.07
	0.39	0.37	0.12	0.32	0.30	0.09
EDU	35.08***	32.76***	6.72**	25.86***	24.55***	3.04*
	9.74	9.18	3.00	7.86	7.43	2.14
FEMALE	0.04	-1.71	1.32	-0.54	-2.26	1.73
	13.36	12.72	4.45	11.14	10.65	3.17
MARRIED	3.77	1.51	0.66	5.18	4.13	0.16
	10.69	10.30	4.13	9.52	9.22	2.95
METRO	-32.53***	-33.10***	-2.53	-26.55***	-28.41***	0.76
	11.01	10.39	3.35	8.83	8.37	2.39
GDP	0.02**	0.02**	0.00	0.02**	0.02***	0.00*
	0.01	0.01	0.00	0.01	0.01	0.00
Constant	-85.00***	-73.52**	-11.55	-67.23**	-67.10**	0.99
	34.45	33.09	12.94	30.18	29.17	9.24
Rho	0.39	0.38	0.18	0.30	0.28	0.18
Log-likelihood	-11228	-11161	-9509	-11030	-10975	-8876
<i>n</i>	1,877	1,877	1,877	1,877	1,877	1,877

〈표 8〉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불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159.69***	103.13***	70.43***	12.07	-5.12	5.37
	22.57	18.87	11.12	19.31	15.25	7.95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12.77***	13.20***	-0.62	2.98	4.92**	-1.64*
	4.36	3.62	1.86	3.49	2.80	1.26
FNUM	-0.98	0.26	-1.00	-1.52	-1.26	-0.01
	1.95	1.62	0.81	1.54	1.24	0.55
AGE	-0.14	-0.05	-0.07	-0.03	0.00	-0.05
	0.23	0.19	0.08	0.17	0.14	0.05
EDU	12.96**	7.49*	5.14**	2.05	-0.43	2.13*
	6.56	5.41	2.28	4.70	3.86	1.47
FEMALE	-4.77	-2.53	-0.73	-6.09	-4.75	-0.84
	7.13	5.90	2.74	5.35	4.35	1.82
MARRIED	7.58*	5.02	3.47*	5.24	3.88	1.41
	5.22	4.36	2.53	4.44	3.51	1.80
METRO	7.28	5.59	-0.22	-3.01	-1.78	-1.29
	6.87	5.66	2.35	4.86	4.01	1.51
GDP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nstant	-20.38	-14.93	-11.09	10.71	9.25	4.83
	19.65	16.35	9.13	16.20	12.89	6.51
Rho	0.38	0.37	0.12	0.23	0.27	0.05
Log-likelihood	-32107	-31132	-28468	-31313	-30016	-26819
<i>n</i>	5,416	5,416	5,416	5,416	5,416	5,416

〈표 8〉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종교없음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127.49***	91.14***	119.05***	42.33***	38.57***	11.31***
	9.47	8.77	49.63	8.41	7.88	3.82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0.48	-0.86	9.96*	1.18	0.29	1.29**
	1.98	1.79	6.79	1.73	1.60	0.70
FNUM	2.43***	1.86**	-0.79	1.42**	0.93	0.42*
	0.95	0.85	4.81	0.82	0.76	0.32
AGE	0.42***	0.40***	1.05***	0.43***	0.40***	0.03
	0.13	0.10	0.43	0.10	0.09	0.03
EDU	21.65***	19.32***	19.07**	15.68***	13.03***	3.88***
	3.35	2.79	11.13	2.77	2.48	0.89
FEMALE	-1.95	-2.42	2.24	-0.91	-2.81	2.33**
	3.70	3.21	12.52	3.15	2.87	1.13
MARRIED	3.24	1.99	8.47	2.38	1.92	1.02
	2.57	2.36	8.43	2.27	2.12	0.98
METRO	2.62	3.12	-16.59**	8.09***	7.30***	-0.38
	3.57	2.83	7.30	2.85	2.52	0.83
GDP	0.00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Constant	-15.36**	2.44	-42.90*	3.38	6.20	-4.35*
	8.25	7.30	31.48	7.09	6.54	2.95
Rho	0.71	0.60	0.69	0.64	0.59	0.27
Log-likelihood	-158880	-156373	0.0507	-155383	-153527	-134086
n	26,422	26,422	3,442	26,422	26,422	26,422

〈표 9〉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전체 가구	13.45***	10.37***	3.47***	1.97**	1.37*	3.07***
개신교	5.82***	5.24***	3.98***	-0.35	-0.53	0.49
천주교	3.18***	1.89**	3.92***	-0.49	-0.63	0.29
불교	7.07***	5.47***	6.33***	0.62	-0.34	0.68
종교없음	13.47***	10.39***	2.40***	5.03***	4.89***	2.96***

* 표 안의 값은 주된 설명변수인 TBR의 t값

* “***”, “**” 및 “*”은 각각 1%, 5% 및 10%의 유의수준

IV. 결 론

본 연구는 세법상 절세효과를 통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과 함께 일반적인 비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기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차연도(2007년)–9차연도(2015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절세효과의 크기가 기부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2013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된 기부자인 고세율 가구의 절세효과가 감소했을 때 동(同)세법개정을 전후한 2개 연도에 걸친 해당 계층의 기부금 지출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설계에서 본 연구는 9차연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가구원별 종교가 포함되어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조세혜택의 영향이 가구별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인 2013년말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절세효과의 감소에 따라 총기부금 지출액의 유의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의 유의적 변동은 없었던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비교적 절세효과와 무관하게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작은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개인의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종교단체 기부금에 비해서는 약해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감소한 절세효과에 대응해서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할 경우에는 나머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공익적 기부금과 함께 상대적으로 강한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유의적인 지출액 변화가 확인

되지 않은 반면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공익적 기부금에서는 전체 가구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욱 유의적인 지출액의 감소가 발생했고, 종교단체 기부금에서는 전체 가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유의적인 지출액 증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세율 가구 중 특히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종교단체 기부금의 감소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당초 감소시키려던 것보다 더욱 감소시킨 반면 여기서 줄인 금액을 추가적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천주교 가구의 “종교적 관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이 다른 종교 유형과 차별화된 기부금 종류별 변동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인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대상 기간에 걸쳐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및 공익적 기부금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개인의 종교적·공익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적 고려가 모든 종류의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도 역시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이들 금액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세법상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사후적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인식한 절세효과에 비례해서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을 증가시킨 결과 부수적인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연도 중에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공제한도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가구들이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출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행할 경우에는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유의적 결과가 종교없음 가구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가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가구에서는 기부금 지출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별 지출액을 통한 사후적인 절세효과 정도의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더욱 현저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전적인 절세효과가 한도초과 기부금 지출액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교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별 종교에 따른 비경제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일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는 반면 기부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세정책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종교별 특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장래의 기부금 관련 조세정책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 · 김계정 · 허영혜. 2012.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다양한 형태의 기부행동 간 연관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39 (1) : 163 – 197.
- 강철희 · 편창훈 · 오장용. 2015. “가구 단위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의 자선적 기부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보완재 vs. 대체재 검증”. 한국사회정책 22 (2) : 195 – 226.
- 김솔미 · 김지범. 2016. “종교유형과 종교활동 참석빈도가 자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9 (4) : 1 – 28.
- 선우희연 · 전병욱 · 정운오. 2017.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통계연구 22 (2) : 153 – 182.
- 손병덕 · 구철희. 2013. “기부행위에 종교와 기부자정보공개의 영향이 있는가?”. 사회복지연구 44 (4) : 351 – 366.
- 송명규. 2016. “종교가 친환경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 24 (1) : 27 – 56.
- 염지혜. 2016. “한국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교의 영향—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9 (3) : 285 – 317.
- 신종국 · 박민숙. 2013. “종교적 성향이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원 활용과 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8 (3) : 69 – 83.
- 우원규. 2013. “종교가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413 – 432.
- 이연희 · 김지범. 2016. “노인의 종교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43 : 207 – 229.
- 전병욱 · 선우희연 · 정운오. 2015. “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미치는 한계세율의 영향을 중심으로”. 재정패널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Cotteril, S. and P. John. 2010. How pledging can make a difference to charitable giving :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a book donation campaign. Colchester, Essex : UK Data Archive.
- Emami, M. and K. Nazari. 2012. Entrepreneurship, religion and business ethics. *Australia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1(11) : 59 – 69.
- Robbins, K. 2004. History of philanthropy. *Hilanthropy in America : A comprehensive historical encyclopedia* Volume 1. Santa Barbara, California : ABC – Clio, Inc.
- Wiseman, T. and A. Young. 2013. Religion and entrepreneurship activity in the US. *Annual Proceeding of the Wealth and Well-being of Nations* 5 : 95 – 114.

Effects of Household Religion on Tax Savings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Related Tax Benefits

Byung Wook Ju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ousehold religions on the decision making of charitable contribution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ax laws revision in 2014 to apply tax credits, instead of deductions, for charitable contributions significantly lowered public-purpose ones with religious ones not affected enough.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decision making on religious ones to reflect relatively stonger personal faiths than public ones are made irregardless of tax savings. Doing this analysis by each religion, it was additionally found that, unlike households with other religions, the catholic households significantly increased religious ones, reducing much more public ones, to the tax laws revision in 2014, which implies noticeably higher relious allegiance of catholic households.

This study also showed that charitable contibution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whether religious ones or not and whether above-the-limit ones or not, as tax savings effect grows bigger, which implies that basic economic considerations make important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Specifically, the above-the-limit ones not to birng about additional tax savings effect are presumed to be increased reflecting that the decision making on those ones are not independent or those ones are not clearly recognized among taxpayers. However, households with any religion, which can be regarded to be more interested in tax savings effect, appeared quite a different behaviors, which implies the efforts not to breach the uppper limits of deductions or tax credits.

〈Key words〉 Religion, Religious-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purpose charitable contributions, Above-the-limit charitable contributions, Tax savings effect, Tax credit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bwjun@uos.ac.kr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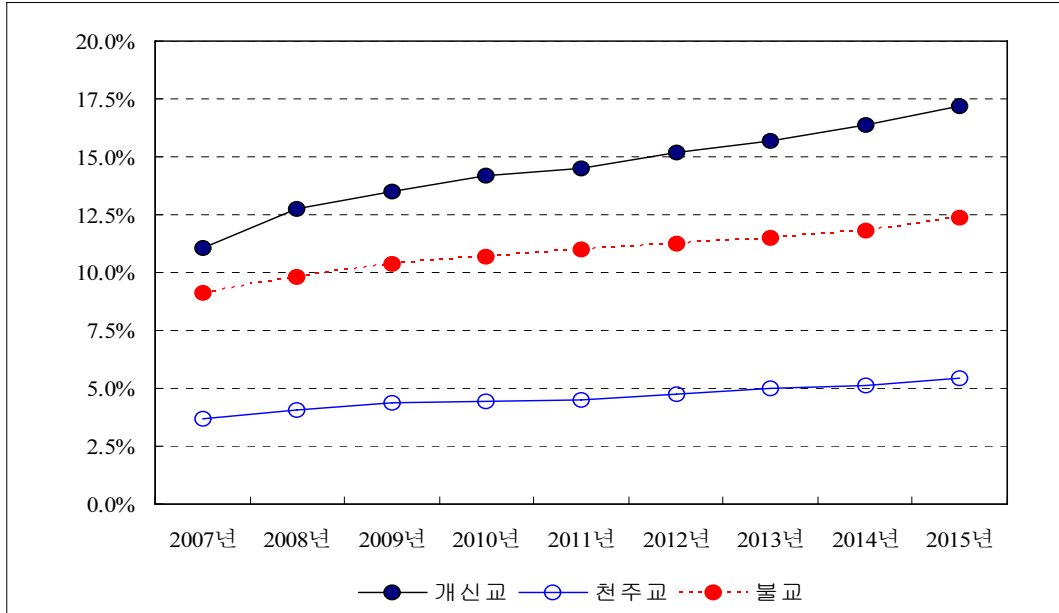
〈표 10〉 종교 구성에 따른 가구유형의 분포(2015년)

구분	가구주	배우자	배우자 외 가구원 ²⁰⁾	계	비율
1인가구	종교①			320	6.6%
	종교없음			594	12.3%
2인가구	종교①	종교①		439	9.1%
	종교①	종교② ²¹⁾		2	0.0%
	종교①	종교없음		12	0.2%
	종교없음	종교①		55	1.1%
	종교없음	종교없음		489	10.1%
	종교①		종교①	70	1.4%
	종교①		종교②	0	0.0%
	종교①		종교없음	29	0.6%
	종교없음		종교①	9	0.2%
	종교없음		종교없음	150	3.1%
3인 이상 가구	종교①	종교①	종교①	660	13.7%
	종교①	종교①	종교②	1	0.0%
	종교①	종교②	종교①	0	0.0%
	종교①	종교②	종교②	0	0.0%
	종교①	종교②	종교③	1	0.0%
	종교①	종교①	종교없음	180	3.7%
	종교①	종교없음	종교①	6	0.1%
	종교없음	종교①	종교①	34	0.7%
	종교①	종교없음	종교없음	14	0.3%
	종교없음	종교①	종교없음	99	2.0%
	종교없음	종교없음	종교①	21	0.4%
	종교①	종교없음	종교②	0	0.0%
	종교없음	종교①	종교②	1	0.0%
	종교①	종교②	종교없음	3	0.1%
	종교없음	종교없음	종교없음	1,413	29.2%
	종교①		종교①	61	1.3%
	종교①		종교②	1	0.0%
	종교①		종교없음	19	0.4%
	종교없음		종교①	9	0.2%
	종교없음		종교없음	140	2.9%
계				4,8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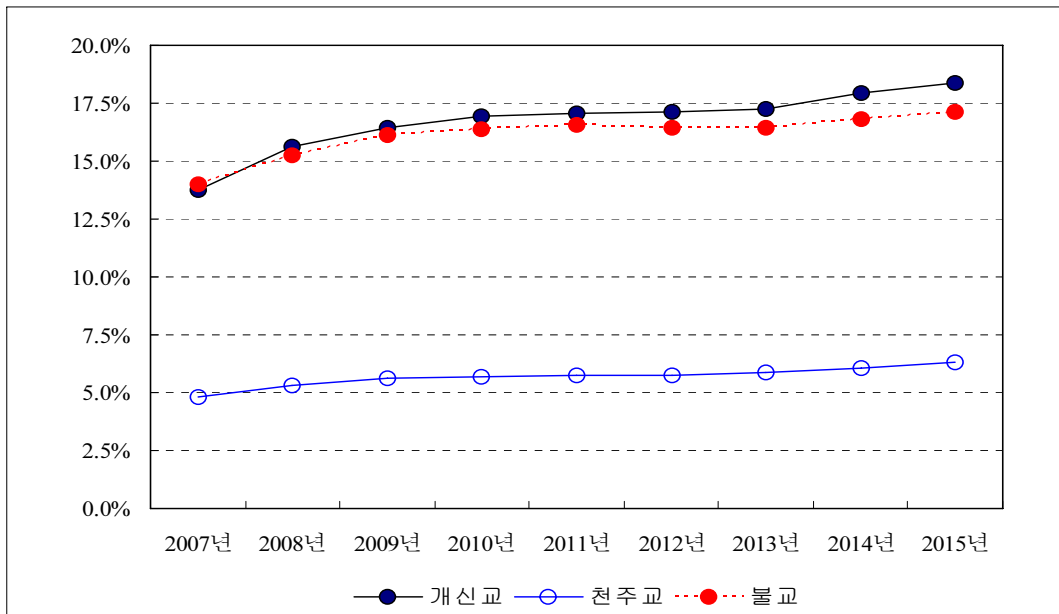
20) 배우자 외의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가구원이 모두 “종교없음”인 경우에는 “종교없음”으로 구분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답변한 가구원의 종교로 구분했다(“종교없음”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 가구원이 2명 이상이면서 이들의 종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없었다.).

21) 종교유형 중에서 “기타”는 동일한 종교로 취급한 것이다.

〈그림 1〉 가구별 종교 분포(2007-2015년)(가구 단위 분석-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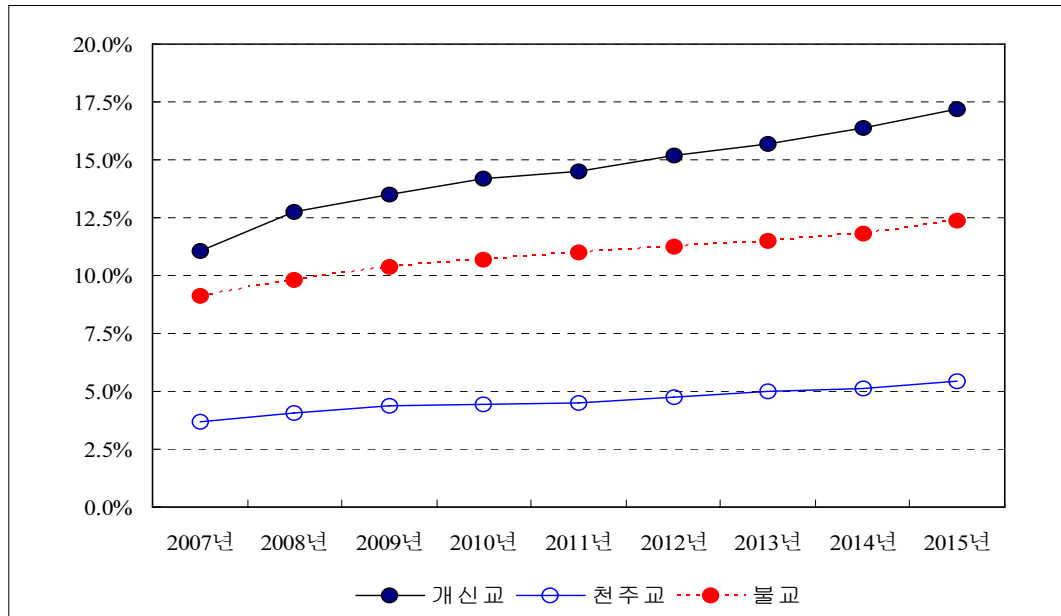


〈그림 2〉 가구별 종교²²⁾ 분포(2007-2015년)(가구 단위 분석-대체적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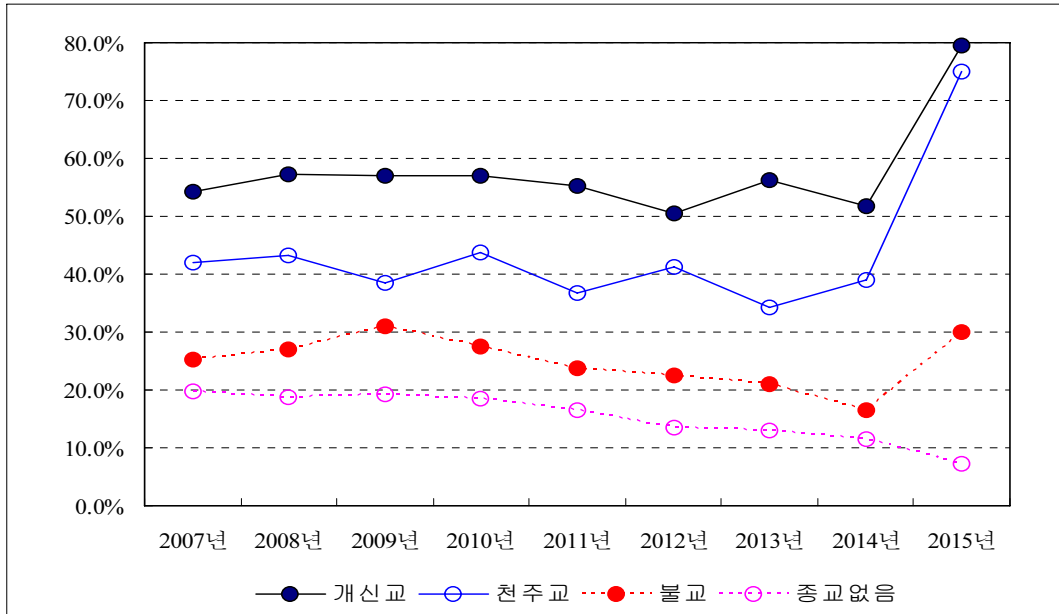
22) 가구별 종교의 구분은 <표 10>에 따른 것이다(“종교①”을 개별 가구의 종교로 구분하였다.).

〈그림 3〉 가구원별²³⁾ 종교 분포(2007-2015년)(가구원 단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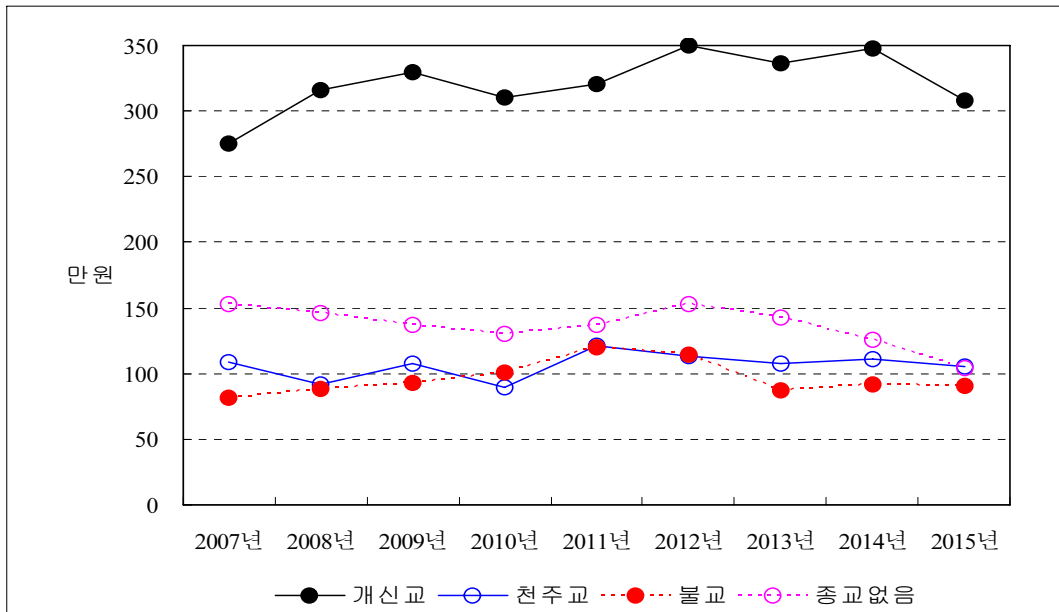


23) 가구원 수는 매년 hp1d01, ..., hp1d09 개수의 합계이고, wfnum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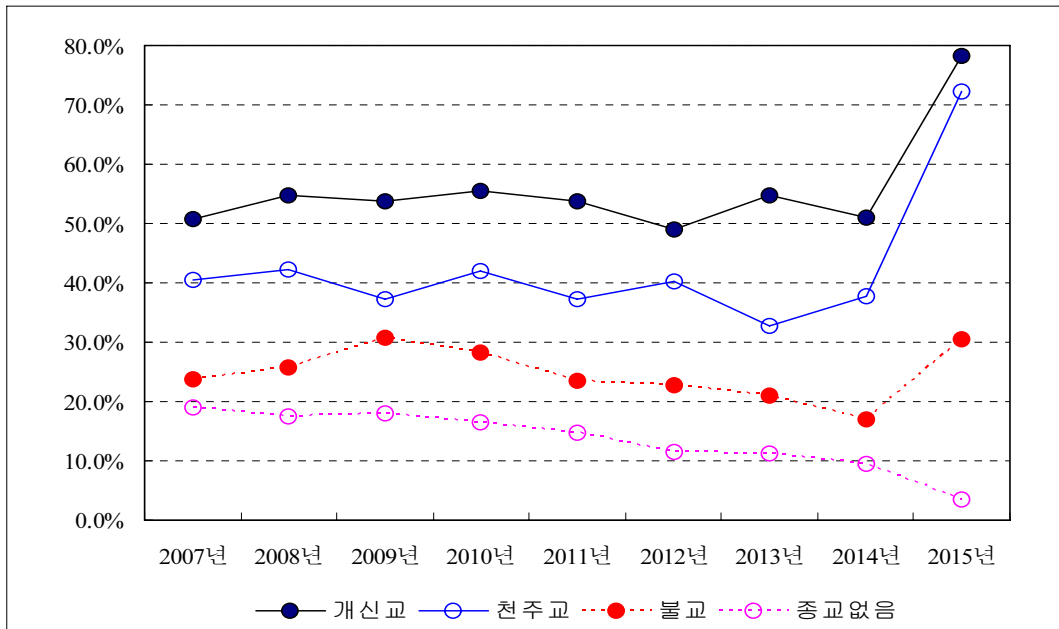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 비율
(가구 단위 분석-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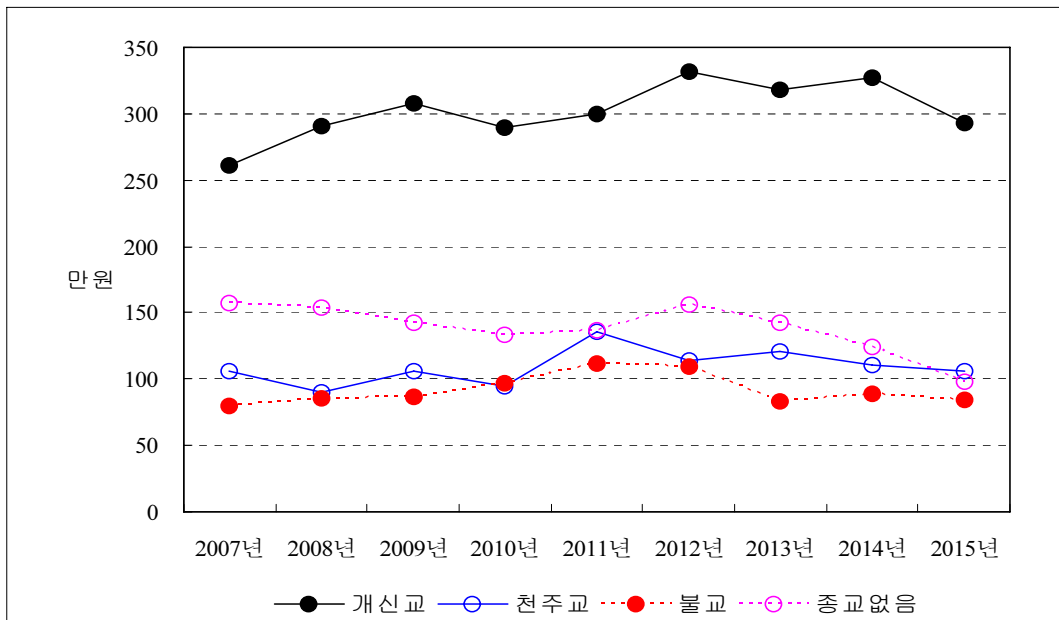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1인당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
(가구 단위 분석-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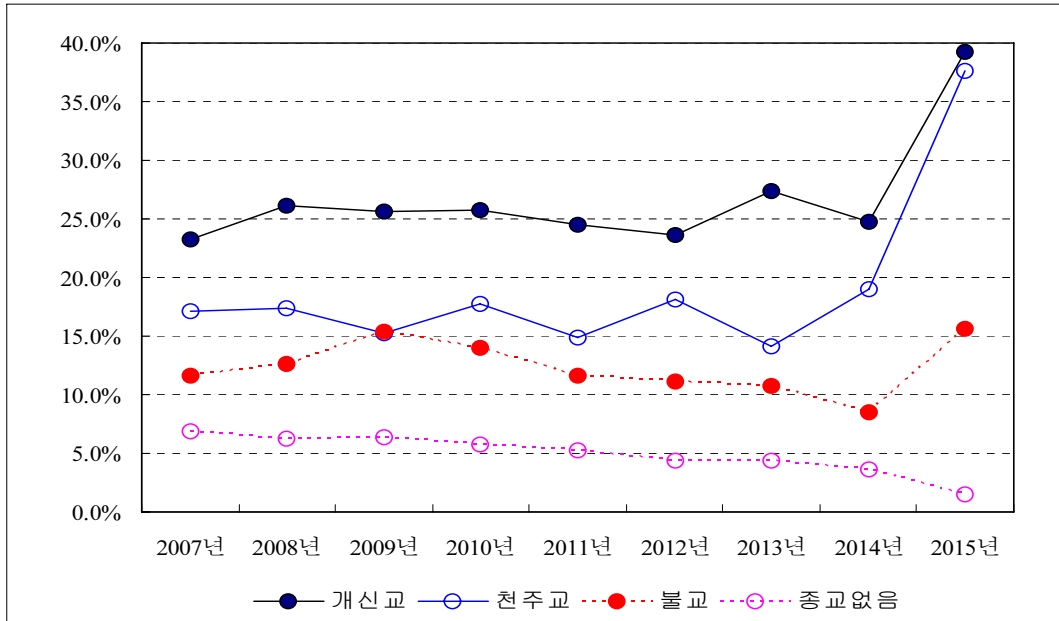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 비율
(가구 단위 분석-대체적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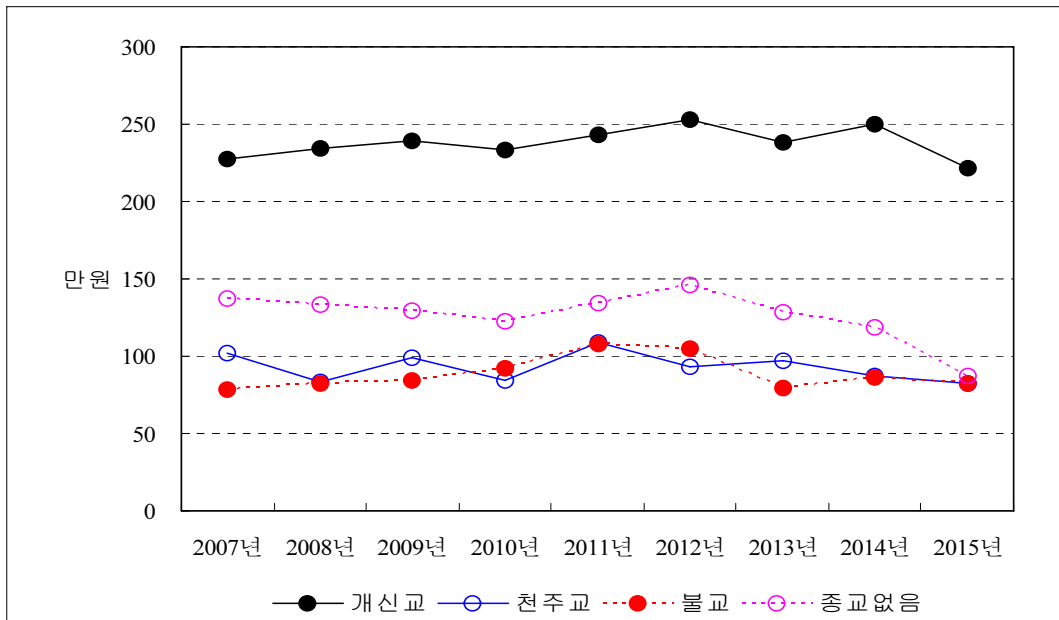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1인당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
(가구 단위 분석-대체적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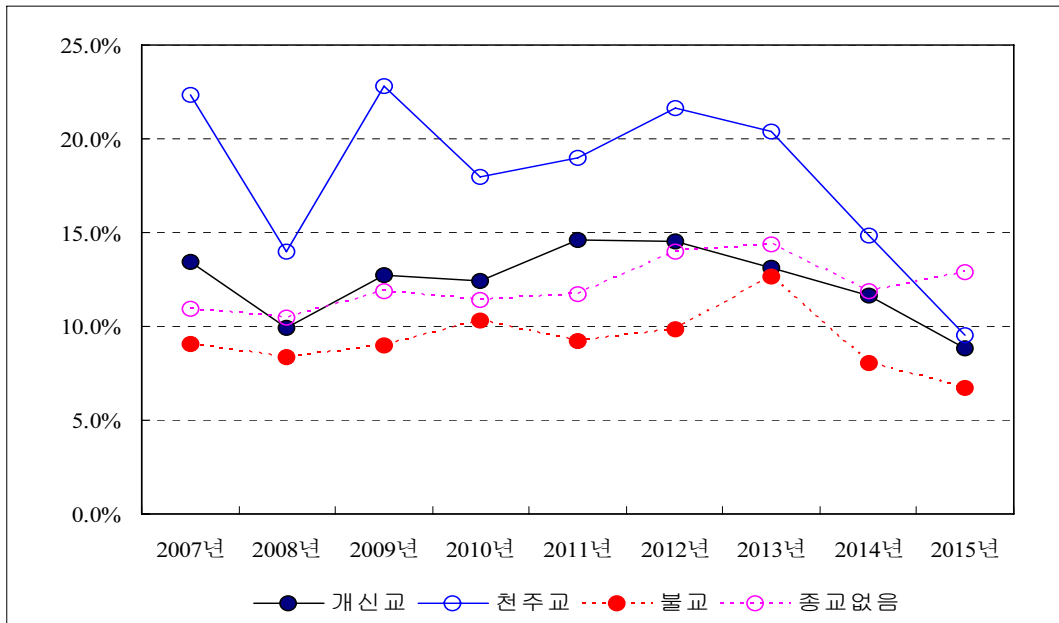
〈그림 8〉 연도별 및 가구원 종교별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 비율
(가구원 단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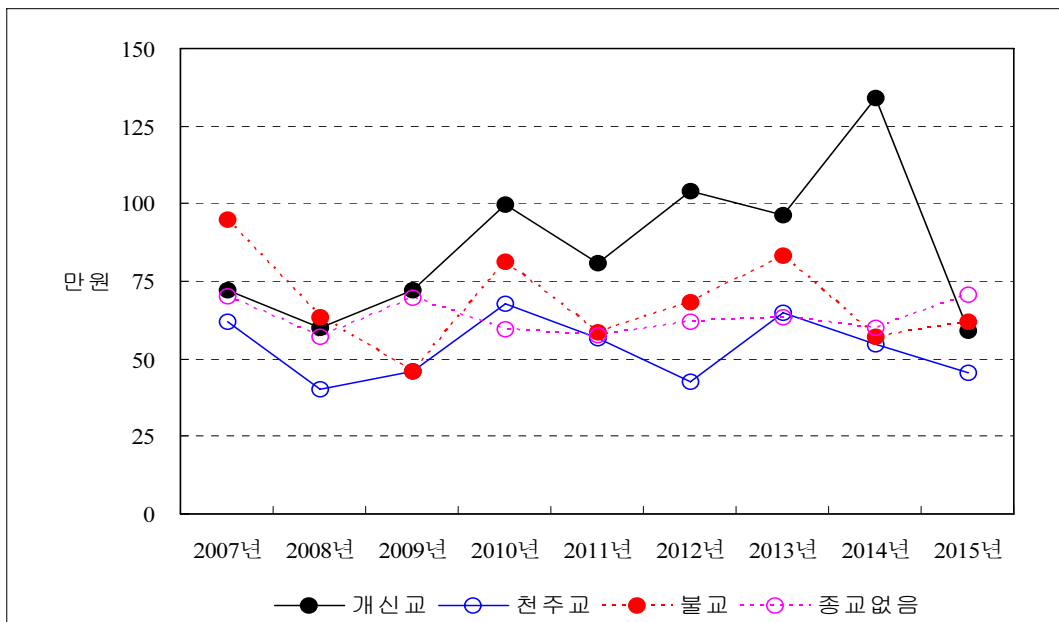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및 가구원 종교별 1인당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
(가구원 단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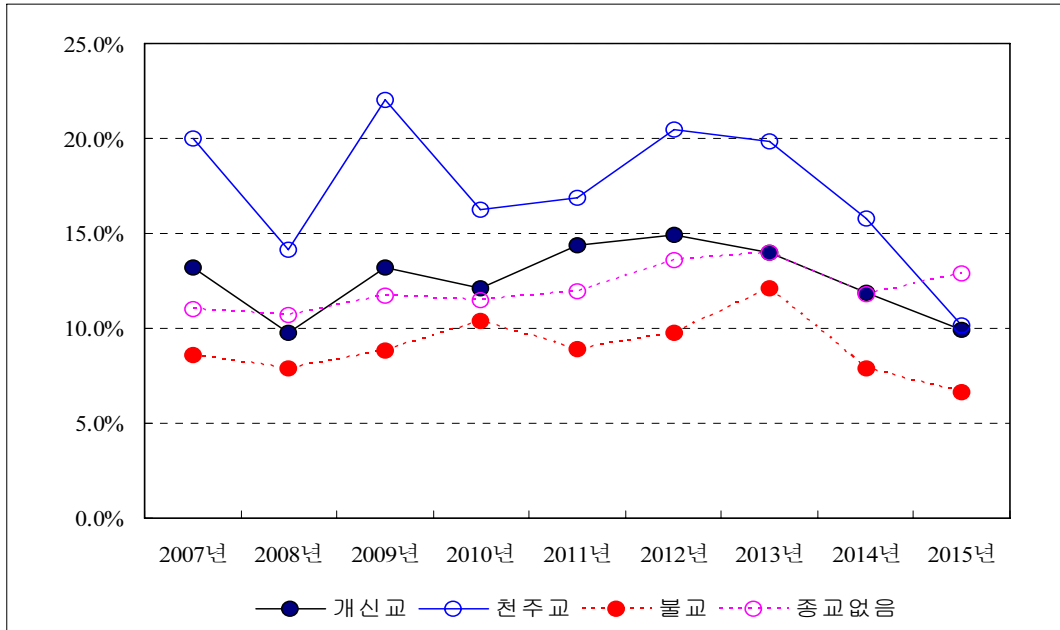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공익적 기부금 지출 비율
(가구 단위 분석-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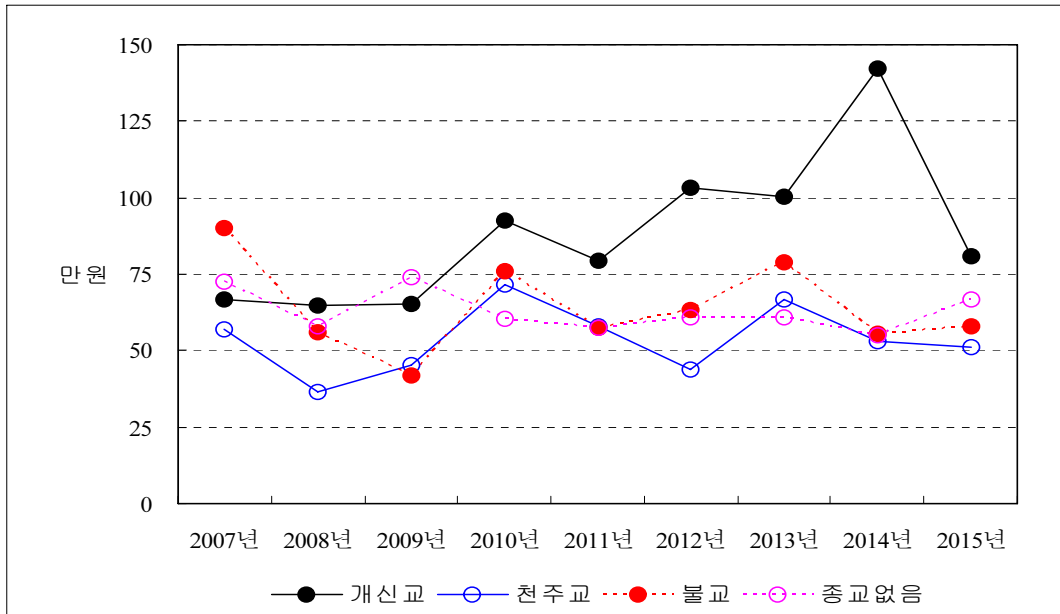
〈그림 11〉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1인당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
(가구 단위 분석-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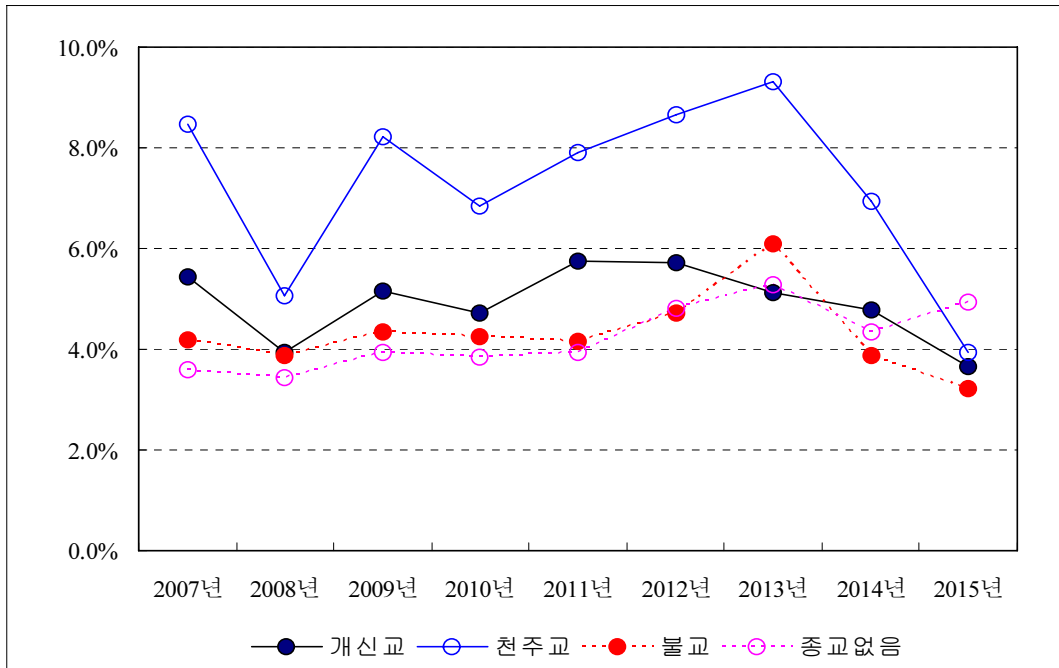
〈그림 12〉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공익적 기부금 지출 비율
(가구 단위 분석-대체적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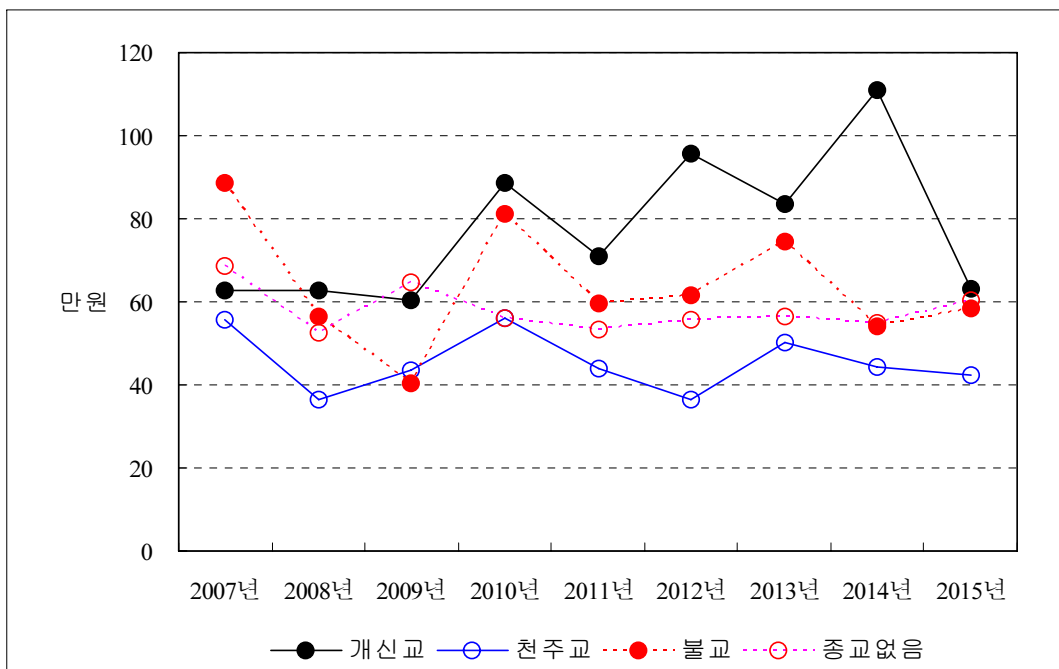
〈그림 13〉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1인당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
(가구 단위 분석-대체적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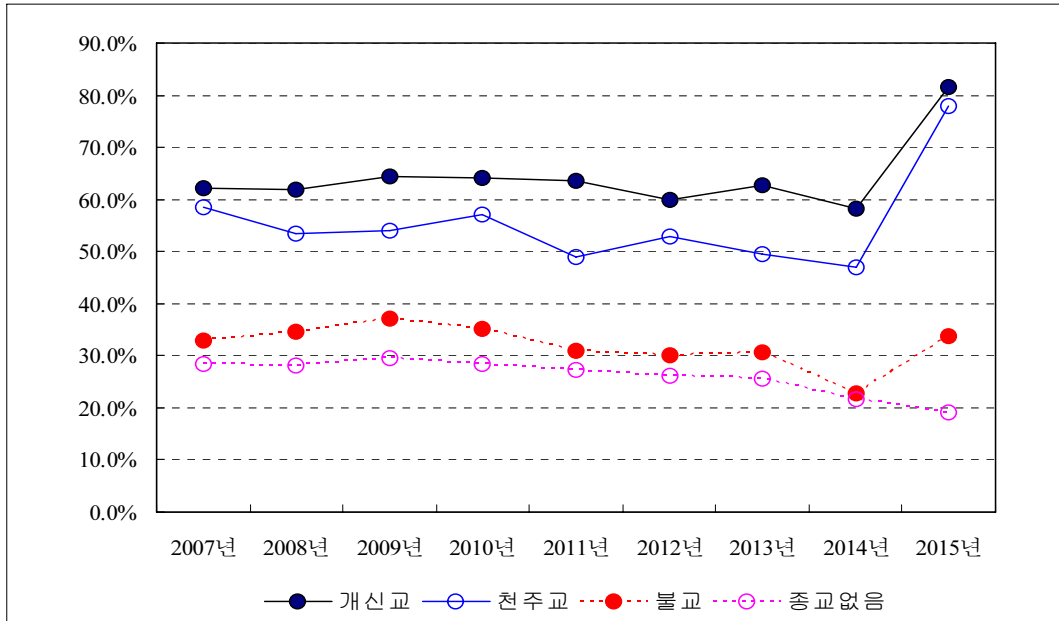
〈그림 14〉 연도별 및 가구원 종교별 공익적 기부금 지출 비율(가구원 단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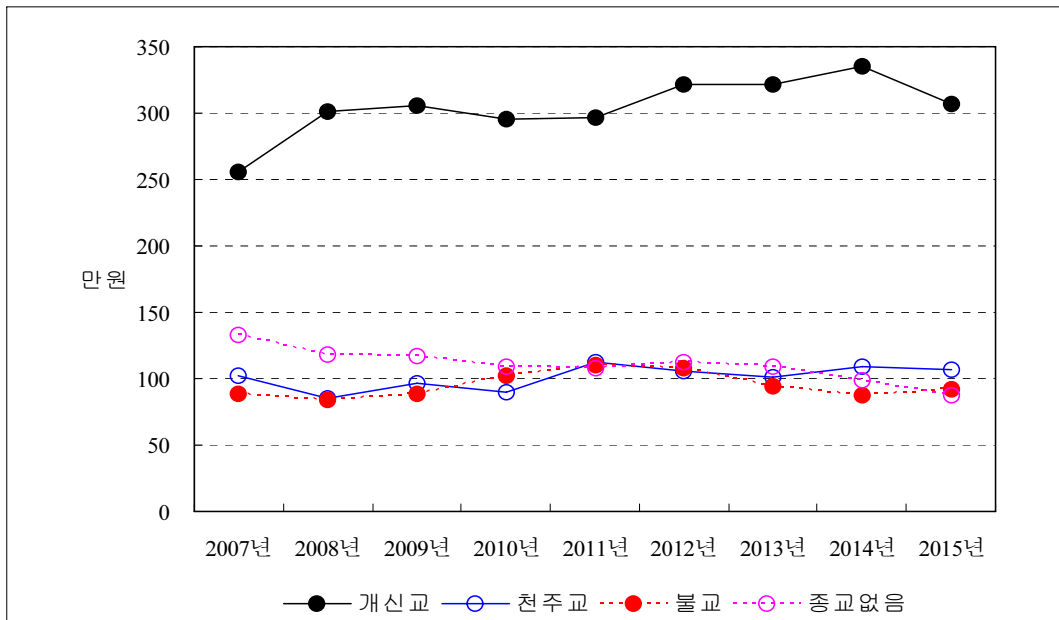
〈그림 15〉 연도별 및 가구원 종교별 1인당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가구원 단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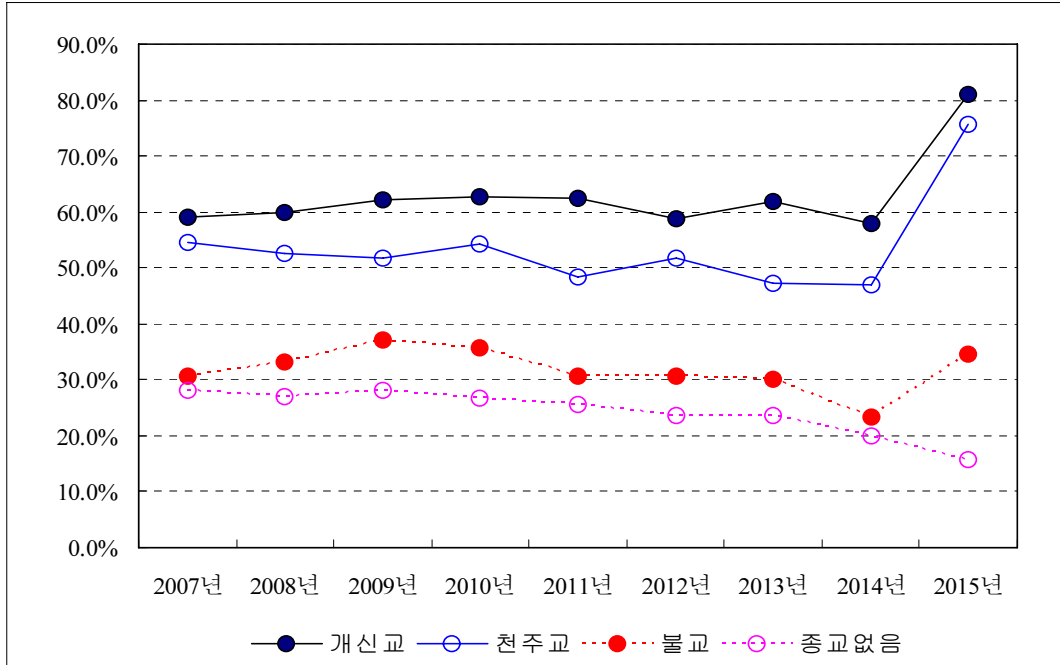
〈그림 16〉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총기부금 지출 비율
(가구 단위 분석-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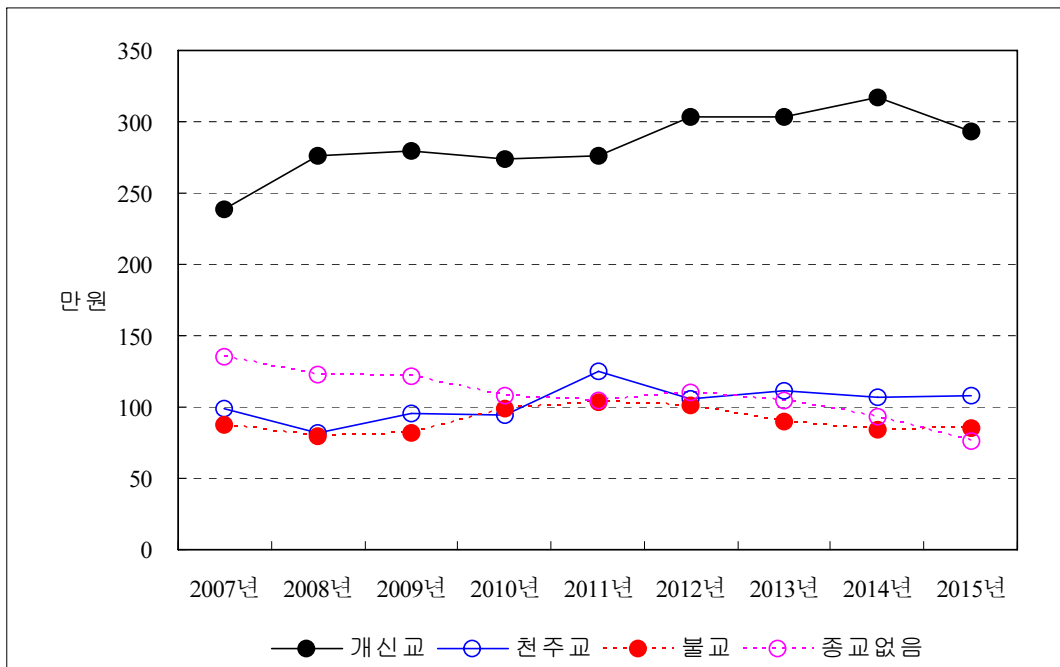
〈그림 17〉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1인당 총기부금 지출액
(가구 단위 분석-가구주 기준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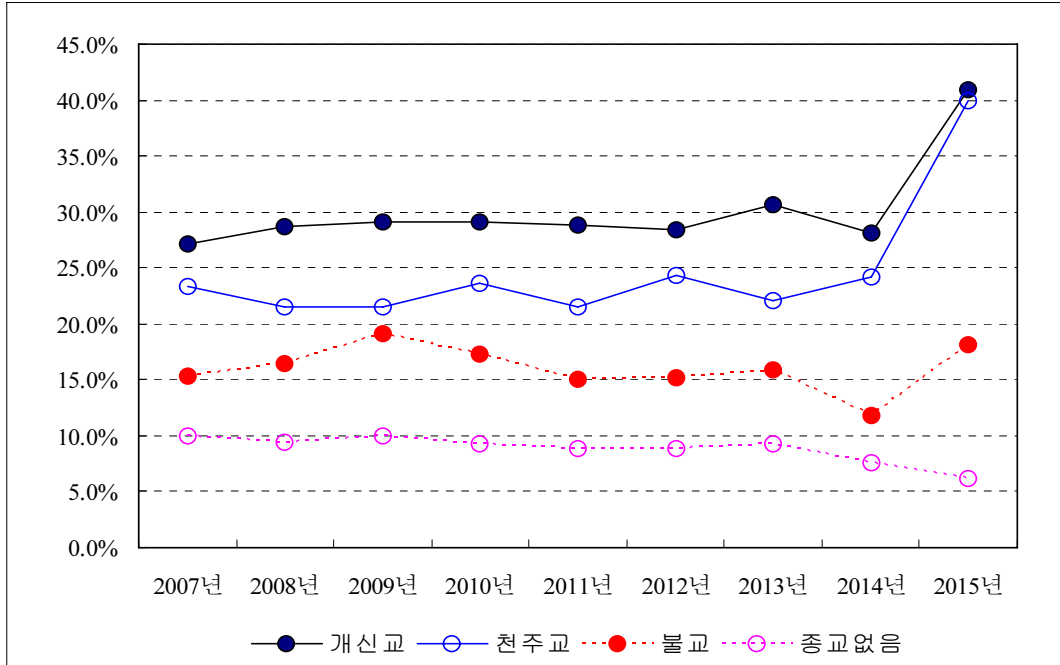
〈그림 18〉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총기부금 지출 비율(가구 단위 분석-대체적 종교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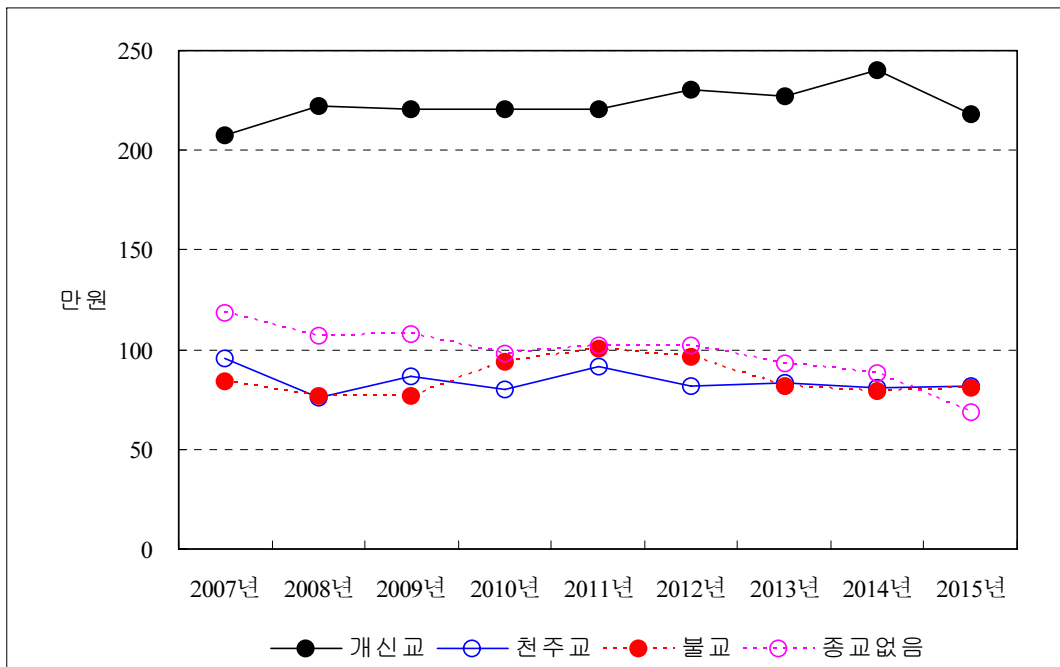
〈그림 19〉 연도별 및 가구 종교별 1인당 총기부금 지출액(가구 단위 분석-대체적 종교 구분)



〈그림 20〉 연도별 및 가구원 종교별 총기부금 지출 비율(가구원 단위 분석)



〈그림 21〉 연도별 및 가구원 종교별 1인당 총기부금 지출액(가구원 단위 분석)



〈표 11〉 가구별 종교 구분에 따라 평균값 비교(대체적 종교 구분)

변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없음
DON	189.67	58.23	30.52	29.52
RELIDON	177.59	48.40	24.18	21.25
PUBDON	12.08	9.83	6.34	8.27
ATLDON	146.01	44.11	18.63	18.93
ATLRDON	138.60	37.68	15.15	14.43
ATLPDON	6.36	5.95	3.19	4.29
TBR	0.0831	0.0873	0.0725	0.0839
TBR*	0.0970	0.0998	0.0849	0.0977
NINCOME	105.78	59.37	271.38	217.20
NASSET	31,966.52	46,416.16	25,857.14	26,546.13
HOUSE	0.62	0.66	0.72	0.57
FNUM	3.20	3.19	2.85	3.01
AGE	51.43	53.04	56.50	49.09
EDU	0.43	0.52	0.20	0.33
FEMALE	0.16	0.15	0.18	0.16
MARRIED	0.87	0.89	0.84	0.81
METRO	0.55	0.75	0.18	0.43
GDP	2,634.75	2,634.93	2,630.78	2,603.26
<i>n</i>	6,757	2,320	6,345	23,984

〈표 12〉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 변화(대체적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기독교			천주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DON	RELIDON	PUBDON
POST	-54.06***	-61.65***	7.40	-97.57**	-70.95**	-28.58**
	17.77	17.29	7.26	42.08	42.82	16.36
H_MTR	406.43***	346.75***	49.87	51.00	-45.35	93.18**
	131.14	132.42	41.02	89.10	69.03	50.85
POST*H_MTR	-64.86	-68.58	4.62	1.04	71.15*	-68.95**
	65.37	62.06	18.21	61.57	54.83	39.02
NINCOME	0.01	0.01*	0.00	0.01**	0.00	0.01**
	0.01	0.01	0.00	0.01	0.00	0.01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23.42	30.31	-0.03	-22.75	11.90	-34.94
	95.10	95.61	17.96	43.54	40.92	34.46
FNUM	-28.09	-32.64*	3.90	57.51***	62.86***	-6.59
	24.16	23.79	5.25	8.89	10.54	9.08
AGE	-3.10	-2.39	-0.93	6.15***	3.13*	3.11*
	3.23	3.30	0.83	2.46	1.99	2.20
EDU	-91.62	-119.07*	23.87**	91.78*	112.12**	-22.67
	80.09	80.67	14.40	62.13	60.12	27.10
FEMALE	-113.44**	-134.01**	18.91*	31.54	79.37	-52.50
	68.36	68.97	13.97	61.97	64.50	57.16
MARRIED	16.31	10.39	3.67	-152.00**	-126.13**	-30.29
	39.79	39.40	3.86	76.94	72.45	59.20
METRO	73.91	54.26	18.77	-46.57	25.61	-78.11*
	69.75	72.00	23.47	47.06	34.98	58.67
Constant	446.35**	445.64**	11.68	-270.12*	-206.93*	-58.32
	221.01	223.25	35.51	181.26	158.28	130.62
Rho	0.79	0.81	0.90	0.03	0.30	0.18
R ²	0.2293	0.1727	0.0618	0.4665	0.4676	0.3813
n	228	228	228	54	54	54

* 상단과 하단의 값은 각각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 “***”, “**” 및 “*”은 각각 1%, 5% 및 10%의 유의수준

〈표 12〉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 의사결정 변화(대체적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종속변수	불교			종교없음		
	DON	RELIDON	PUBDON	DON	RELIDON	PUBDON
POST	-25.46**	-18.60*	-6.93	-28.07***	-19.01**	-9.67***
	13.23	14.45	5.98	8.87	9.21	3.02
H_MTR	75.39***	29.62	45.67***	74.31*	37.04	37.09
	26.96	27.06	18.30	47.57	41.07	42.96
POST*H_MTR	8.23	25.48	-17.49	6.15	6.40	0.81
	56.43	58.24	23.90	19.28	23.51	14.93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15.93	-7.08	-10.16	11.68	3.35	9.52
	36.77	32.78	14.28	14.32	15.44	9.82
FNUM	0.31	9.02	-9.66*	36.40**	5.39	28.20
	16.02	14.25	6.75	19.39	9.33	23.29
AGE	1.02	2.12*	-1.10*	0.67	0.01	0.65
	1.36	1.31	0.75	1.00	0.74	0.61
EDU	19.29	33.39	-11.71	-12.13	-35.39	27.00
	45.78	43.46	15.04	50.48	38.90	59.24
FEMALE				-9.51	-25.19**	18.54
				24.17	15.09	18.07
MARRIED	14.62	-7.26	21.42*	-15.33	13.06	-20.56*
	36.68	31.56	16.22	15.13	13.83	13.39
METRO	49.72	21.89	25.28	-39.62*	-12.35	-27.05*
	43.13	39.88	23.09	30.75	22.68	20.38
Constant	-57.76	-140.06*	85.01*	-59.21	32.39	-91.45*
	100.94	92.30	53.16	80.11	57.11	64.82
Rho	0.43	0.23	0.24	0.77	0.51	0.70
R ²	0.3332	0.2798	0.2567	0.1511	0.0402	0.1425
n	84	84	84	246	246	246

〈표 13〉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 의사결정 변화(대체적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DON	RELIDON	PUBDON
전체 가구	-0.55	0.18	-1.45*
개신교	-0.99	-1.11	0.25
천주교	0.02	1.30*	-1.77**
불교	0.15	0.44	-0.73
종교없음	0.32	0.27	0.05

* 표 안의 값은 주된 설명변수인 POST*H_MTR의 t값

* “***”, “**” 및 “*”은 각각 1%, 5% 및 10%의 유의수준

〈표 14〉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대체적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기독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353.81***	320.05***	55.38***	-14.21	-17.77	-1.49
	57.50	57.27	14.16	56.03	55.57	9.59
NINCOME	-0.01***	-0.01***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19.41**	16.74*	2.78	12.54	9.98	2.07
	11.16	11.09	2.52	10.78	10.68	1.62
FNUM	46.10***	42.67***	2.77**	38.11***	37.37***	0.53
	5.52	5.48	1.20	5.30	5.25	0.76
AGE	1.22**	1.22**	0.00	1.06**	1.08**	-0.06
	0.68	0.67	0.12	0.63	0.62	0.07
EDU	33.10**	26.52*	8.87***	22.08*	17.79	3.38**
	17.29	17.00	3.13	16.12	15.90	1.86
FEMALE	13.67	10.49	3.38	10.14	10.61	-0.43
	21.84	21.61	4.50	20.81	20.57	2.80
MARRIED	33.67**	28.43*	5.66*	28.45**	25.86*	2.48
	17.48	17.40	4.18	17.00	16.86	2.79
METRO	-21.44	-21.83	-0.24	-6.74	-7.42	-0.20
	18.22	17.83	3.03	16.72	16.45	1.76
GDP	0.09***	0.08***	0.01***	0.06***	0.05***	0.00
	0.01	0.01	0.00	0.01	0.01	0.00
Constant	-350.74***	-306.92***	-48.18***	-225.94***	-212.85***	-4.64
	52.34	51.94	12.05	50.38	49.89	8.09
Rho	0.53	0.51	0.23	0.48	0.47	0.13
Log-likelihood	-47997	-47966	-38510	-47809	-47752	-36031
<i>n</i>	6,757	6,757	6,757	6,757	6,757	6,757

〈표 14〉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대체적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천주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156.67***	114.66***	48.59***	36.56	37.08*	-1.83
	31.61	30.70	11.66	28.77	28.11	8.03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4.34	4.16	0.03	4.87	3.60	0.39
	6.69	6.47	2.24	5.95	5.78	1.56
FNUM	6.61**	4.62*	1.68*	3.78*	1.83	1.72***
	3.19	3.08	1.05	2.82	2.74	0.73
AGE	0.79**	0.75**	0.09	0.70**	0.69***	0.03
	0.36	0.35	0.11	0.31	0.30	0.07
EDU	31.53***	29.34***	6.03***	23.21***	22.88***	1.99
	8.72	8.31	2.54	7.38	7.08	1.79
FEMALE	4.48	3.07	1.12	4.27	2.11	2.01
	11.72	11.32	3.86	10.33	10.03	2.68
MARRIED	-1.12	-2.54	0.48	-0.01	-0.48	0.06
	10.31	10.02	3.77	9.38	9.16	2.61
METRO	-32.56***	-32.16***	-2.96	-25.32***	-27.62***	1.23
	10.06	9.58	2.80	8.37	8.03	1.96
GDP	0.03***	0.03***	0.00	0.03***	0.03***	0.00*
	0.01	0.01	0.00	0.01	0.01	0.00
Constant	-95.25***	-82.14***	-13.56	-80.90***	-79.87***	1.06
	32.04	31.02	11.25	28.67	27.92	7.78
Rho	0.38	0.36	0.17	0.30	0.29	0.18
Log-likelihood	-13974	-13907	-11679	-13758	-13704	-10816
<i>n</i>	2,320	2,320	2,320	2,320	2,320	2,320

〈표 14〉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대체적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불교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140.70***	89.93***	62.92***	6.92	-8.67	5.37
	19.41	16.27	9.51	16.58	13.14	6.80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9.61***	9.95***	-0.54	1.47	2.99	-1.47*
	3.77	3.14	1.61	3.03	2.44	1.09
FNUM	-0.85	0.17	-0.94*	-1.17	-0.99	-0.02
	1.68	1.40	0.71	1.34	1.08	0.47
AGE	-0.09	-0.03	-0.05	-0.05	-0.02	-0.04
	0.20	0.16	0.07	0.14	0.12	0.05
EDU	14.93***	9.30**	5.45***	3.19	0.56	2.24**
	5.72	4.73	2.00	4.13	3.40	1.28
FEMALE	-2.20	-1.18	-0.51	-4.43	-3.64	-0.61
	5.89	4.90	2.41	4.61	3.73	1.61
MARRIED	6.55*	4.27	3.21*	4.49	3.30	1.47
	4.64	3.88	2.24	3.94	3.13	1.58
METRO	5.33	4.32	-0.89	-2.42	-1.20	-1.24
	6.02	4.96	2.02	4.23	3.51	1.29
GDP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nstant	-14.74	-9.23	-9.46	12.83	11.72	3.83
	16.78	14.01	7.78	13.87	11.07	5.53
Rho	0.39	0.38	0.12	0.24	0.27	0.06
Log-likelihood	-37236	-36110	-32915	-36286	-34789	-30977
<i>n</i>	6,345	6,345	6,345	6,345	6,345	6,345

〈표 14〉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대체적 종교 구분) (계속)

가구별 종교	종교없음					
종속변수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TBR	127.84***	89.80***	343.76***	43.48***	37.80***	14.11***
	9.72	9.06	71.45	8.62	8.08	4.06
NINCOM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SSE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HOUSE	-0.34	-1.66	-11.37	0.81	-0.25	1.30**
	2.03	1.85	11.57	1.78	1.65	0.75
FNUM	2.46***	1.76**	-2.75	1.35*	0.82	0.50*
	0.98	0.87	5.30	0.84	0.78	0.33
AGE	0.46***	0.42***	0.77*	0.46***	0.42***	0.04
	0.13	0.11	0.53	0.11	0.10	0.03
EDU	23.41***	20.77***	71.81***	17.72***	14.67***	4.22***
	3.49	2.91	15.63	2.88	2.59	0.94
FEMALE	-1.40	-1.86	-1.82	-0.30	-2.30	2.48**
	3.70	3.24	13.82	3.15	2.88	1.16
MARRIED	1.89	1.06	25.77***	1.26	1.06	0.74
	2.55	2.36	9.45	2.25	2.11	1.02
METRO	2.14	2.92	15.34	7.95***	7.28***	-0.70
	3.79	3.00	15.03	3.02	2.66	0.88
GDP	0.00**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1	0.00	0.00	0.00
Constant	-6.41	10.21*	-27.90	11.04*	13.46**	-4.03*
	8.48	7.52	43.04	7.27	6.70	3.11
Rho	0.74	0.62	0.76	0.67	0.62	0.27
Log-likelihood	-143846	-141624	0.0916	-140583	-138868	-121978
n	23,984	23,984	3,390	23,984	23,984	23,984

〈표 15〉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세효과의 영향(대체적 종교 구분)

가구별 종교	DON	RELIDON	PUBDON	ATLDON	ATLRDON	ATLPDON
전체 가구	13.45***	10.37***	3.47***	1.97**	1.37*	3.07***
개신교	6.15***	5.59***	3.91***	-0.25	-0.32	-0.15
천주교	4.96***	3.73***	4.17***	1.27	1.32*	-0.23
불교	7.25***	5.53***	6.61***	0.42	-0.66	0.79
종교없음	13.15***	9.91***	4.81***	5.05***	4.68***	3.48***

* 표 안의 값은 주된 설명변수인 TBR의 t값

* “***”, “**” 및 “*”은 각각 1%, 5% 및 10%의 유의수준